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	과 장 양재석 사무관 지무근	042-481-8321 042-481-5400
		2021년 6월 30일(수)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한 · 사우디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

- 사우디, 중동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7월 실시 -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2021년 7월 1일(목)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(CSP: Collaborative Search Program)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‘특허공동심사’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,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.
 -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동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(18년 기준)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.
-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,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.

- 한·미 간 시행 결과('15.9~),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.2%로 일반심사(68.6%)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,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사우디는 인구 약 3,400만 명으로,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, 최근 케이(K)-식품, 케이(K)-진단·방역, 케이(K)-뷰티 인기로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.

* 우리 기업의 사우디 누적 특허신청(출원) 건수 : 301건 ('15년 ~ '19년)

**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기업 수 : 29업체 ('21.6. 기준)

-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, 사우디에 진출하고,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다.”라고 밝히며,

- “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,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덧붙였다.

□ 특허 공동심사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(042-481-5400)로 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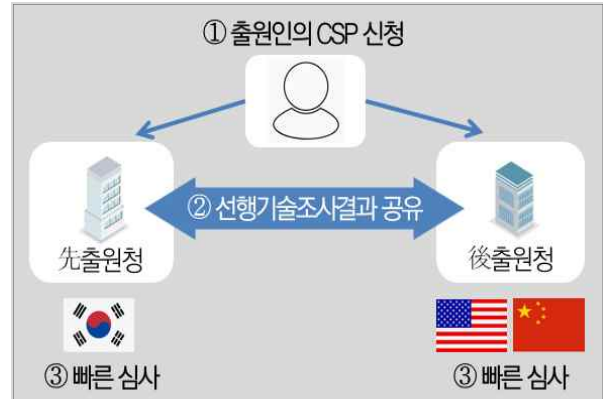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제도과 지무근 사무관(☎ 042-481-5400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□ 특허 공동심사 시범사업(Collaborative Search Program; CSP)

-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, 출원인의 신청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

		('15.9월 ~ <u>시행중</u>)
		('19.1월 ~ 20.12월, <u>일시중단</u>)



□ 기대효과

- **(고품질)** 선행문헌 공유 및 정확한 심사로 등록가능성 제고
- **(신속성)** 별도 수수료 없이 신속한 심사절차 수행
- **(예측가능성)** 동일한 선행문헌 활용 통해 최종결과 일치율 제고

□ 신청방법

-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(www.patent.go.kr)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○ 신청요건

-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(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)이 동일할 것
-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
-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
-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
-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
- ⑥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